## 트럭 탑재형 크레인(Cargo Crane) 안전보건작업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양물에 맞음, 장비의 넘어짐, 장비에 근로자의 깔림,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트럭 탑재형(Cargo Crane)"이라 함은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 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「자동차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을 적재, 하역 등에 사용하는 크레인을 말한다.
  - (나) "정격하중"이라 함은 최대하중에서 훅,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인양 가능한 중량이며, "최대하중"은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최대 인양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.
  - (다) "지브(붐)"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훅을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둥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.
  - (라) "훅"이라 함은 물건을 걸거나, 끌어당기기 위한 갈고리로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거는 장치를 말한다.